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1편

2020. 3. 6.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목차

| ⊢. 개요1   |
|--|
| 1. 목적1   |
| 2. 기본방향1   |
| □.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2                                      |
| 1. 일반 원칙 2   |
| 2. 소독 전 준비사항 3   |
| 3. 소독 시 주의사항 4   |
| 4. 소독 후 주의사항4  |
| 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5                                   |
| [붙임]   |
| 1.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8                                 |
|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11                          |
|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12                         |
|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15                               |
| 5. 일상적인 지역사회 소독하는 방법 16                                  |
| 6.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 17                            |
| 7.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환경부 승인제품) ······· 31                  |
| 8. 자주 묻는 질문 45   |
| [부 록]  |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 52          |
| ※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임시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 |

##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 내 용   |
|--------------|---|
| 소독 전<br>준비사항 |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수정  |
| 소독방법         | <ul> <li>바닥소독 시 유의사항 추가</li> <li>표면소독 내용 추가</li> <li>세탁이 어려운 경우 조치 내용 추가</li> </ul> |
| 붙임           | <ul> <li>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중 중복 기술 삭제</li> <li>자주 묻는 질문 정보 추가</li> </ul>    |
| 부록           |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3판) 추가                                       |

###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 지침 제공 필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 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 지침 준수

### 2. 기본방향

- 집단·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공간이나 환자 거주 공간에 대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절차 안내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감염성 물질을 사멸 시키는 소독 방법 제시
-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이용한 다중시설 공간(구역) 및 환자 거주공간의 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 \*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청소·소독 기준에 따라 시행
  -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
-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7조 등 [붙임 1]

##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 1. 일반 원칙

II

-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는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계획 수립
  -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 시켜 보관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 2. 소독 전 준비사항

- (준비물품)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필요
  - 인체에 직접 적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또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식품첨가물)은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알코올(70%), 제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 [붙임 6]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
- ☞ [붙임 7]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환경부 승인제품)

####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붙임 5, 붙임 6)
-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참고)
- ③ 환경부 **승인 제품된 제품이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며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1,000ppm)하며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필요
- ④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 ⑤ 분무하면 소독제 효과가 미흡하며,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위험 및 흡입 시 위험
-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⑦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 3. 소독 시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비누 손 세정→ 마스크 제거 →비누 손 세정 →새 마스크 착용 →새 장갑 착용

####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② 깨끗한 천(또는 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소독제를 압축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방법은 피할것

###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감염원이 신체부 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다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실시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 장비\* 및 소독제 준비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 준수, 붙임 5 및 붙임 6)
  -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4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25mL
      -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20mL
    -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시설별 소독 장비 종류는 상이하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 적절한 소독 시행 후 재사용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바닥 청소 및 소독시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 내릴 것(압축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은 후 마르도록 둠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은 알코올(70%) 사용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가능성이 있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① 소독제나 물을 적신 일회용 페이퍼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②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소독제를 압축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방법은 피할것
- (화장실 소독)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세탁 소독)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세제나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
  -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장갑과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직물 세탁에 적절한 소독제 선택 필요(붙임 6, 붙임 7 참조)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 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경우 폐기

- (청소·소독 도구)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
  - 한 공간에 사용된 비 다공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 실시
  - 폐기가 어려운 경우 소독제 희석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 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 및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으로 표면을 닦기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직원 사후 관리)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 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 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 ②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및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붙임 4] 참조
  -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시항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 ·제13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소독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
  - \*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 [서식 1] 방역조치 관련 서식

- **(소독이행)** 소독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 6호 소독의 방법」중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의한 소독을 시행해야 함
  -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 · 감독할 수 있음
  - (소독 실시 계획·결과보고)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에게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 실시 전에 소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시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서식 11.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 ㆍ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음

#### ☞ [서식 2] 소독증명서

서식 1

## 방역조치 관련 서식

| 일시적 폐쇄 □ 출입금지 □ 이동제한 □  |   |       |        |              |                      |                           |                            |
|---|---|-------|--------|--------------|----------------------|---------------------------|----------------------------|
|   | 의료  | 기관 업무 | 정지 🗆 🖆 | └독 □         | 명량                   | 병서                        |                            |
| 케다시셔  | 명칭  |       |        |              |                      |                           |                            |
| 해당 시설   | 소재지   |       |        |              |                      |                           |                            |
| 소유자   | 성명  |       |        |              | 생년월                  | 월일                        |                            |
| (관리자)   | 주소  |       |        |              | 전화반                  | <u>년호</u>                 |                            |
|   |   |       | 명령의 구분 | 1            |                      |                           | 이행기간                       |
| 명령의 내용  | 일시적 폐쇄  | 출입금지  | 이동제한   | 의료기관<br>업무정지 | - 1                  | 소독                        | 2020                       |
|   |   |       |        |              |                      |                           | 00:00<br>~2020<br>00:00    |
| 명령대상  | 범위  |       | 시설 전체  |              | <br>(범위 <sup>-</sup> | 시 수<br>한정 시 구체            | <br>설 일부<br>적으로 기재)        |
|   |   |       |        |              |                      |                           |                            |
| 준수사항  | 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시는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       |        |              |                      |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br>H음 장소 사용가능 |                            |
|   | 제5호(소독) 등   | _     |        |              |                      |                           | 등제한), 제2호(의료<br> 한·의료기관 업무 |
|   |   | 년     | 월      | 일            |                      |                           |                            |
|   |   | 00    |        | _            |                      |                           |                            |
| ( 관 인 생 략 )   |   |       |        |              |                      |                           |                            |
| 유의사항  |   |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br>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br>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                            |

## 서식 2

## 소독 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제     | 호<br>소 독 증 명 서   |
|-------|--|
| 대상 시설 |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m²( m³) 소재지   |
|       | 관리(운영)자<br>확인 성명 (인)   |
| 소독기간  | ~  |
| 소독 내용 | 종류<br>약품 사용 내용   |
|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br>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br>소재지<br>성명(대표자)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시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 차이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기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 구분                            | 소독시기  | 사용 재개 기준  | 비고   |
|-------------------------------|---|---|--|
| 집단시설·다중<br>시설 환자 0용<br>공간(구역) | ·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br>이용 확인시  | · 소독제 특성에 따라<br>사용재개                                    | · 차이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br>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br>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br>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br>사용재개 권고 |
| 의료기 <del>관</del><br>(병원)      | <ul> <li>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li> <li>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li> <li>환자 퇴실 후 시행</li> </ul> | · 소독 후 시간당 6회<br>이상 환기 조건에서<br>최소 2시간 환기 후<br>진료재개 권고   | · 진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br>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면용)」<br>안내(20211.)                                    |
| 의료기관<br>(의원급)                 | · 코로나19 의사환자가다:라간후<br>환경관리  |   | · 진종 코로-바이러스김염증 감염<br>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만용)」<br>안내(20211.)                                    |
| 의료기 <del>관</del><br>(응급실)     | ・ 코로내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 · 소독 후 시간당 6~12회<br>환기 조건에서 4시간<br>이상 환기 이후 진료<br>재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br>기관실무안내('20.2.20.)  |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WHO, 2008)

##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     |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
|-----|--|
|     | 2. 가운을 입는다.  |
|     | 3.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를 착용한다.                               |
| 66  | 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
|     | 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br>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     | 6.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
| and | 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기

## □ 손 위생(hand hygiene) 방법

- ①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콜 손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비누를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 씻기



###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붙임 5.6).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일상적인 지역사회 소독하는 방법(예)

-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나.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다. 일반인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500ppm)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15분이상 닦기
    -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일반적으로 환경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 (1) 공공 장소 : 문고리, 팔걸이, 화장실 및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손잡이, 난간, 버튼, 에어컨 콘센트 등
- (3)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지면, 책상, 의자, 전화 등)
- (3) 자주 접촉하는 표면,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2. 각 건물의 문, 홀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어야함
-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 3. 청소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은 청소·소독 담 당자에게 충분한 양으로 제공해야하며, 공급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1. | 2719-0002 | 케비사이드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ul> <li>2) 물체 표면에 본품을 직접 분사 후 2~3분 정도 접나 그대로 말린다.</li> <li>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으로 소독한다.</li> <li>4) 본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li> </ul> | 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여 수건으로 표면을 닦는다.<br>촉시간을 유지(예비세척 30초)한 후 수건을 이용하여 닦아내거<br>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 본품<br>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br>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
| 2. | 2719-0003 | 케비와입스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A. Dispenser   |  |
| 3. | 2719-0018 | 릴라이온버콘마<br>이크로<br>(옥손)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조)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나. 사용방법   | 희석방법<br>100배 희석 (이 약 5g에 물을 넣어 500mL로 한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표면에 본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건조 시킨다. 또는 본품의 희석용액을 종이타올이 들어있는 용기에 부어 종이타올을 충분히 적신다. 소독대상 물체 표면을 본품의 희석용액으로 충분히 적신 종이타올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의 희석용액은 7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5)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4. | 2719-0021 | 인바이로트루액<br>(클로록실레놀)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li> <li>물체 표면에 본 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 대로 건조시킨다.</li> <li>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li> <li>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5. | 2719-0025 | 엠피스타<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벤질암모늄<br>염화디알킬디메<br>틸암모늄(2:3)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6. | 2719-0026 | 다-125<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7. | 2719-0027 | 릴라이온버콘<br>(옥손)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100배 희석(이 약 10g에 물을 넣어 1L로 한다.)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 표면에 본 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 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건조시킨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의 희석용액은 7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5)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8. | 2719-0030 | 다이렉트이스타<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벤질암모늄·<br>염화디알킬디메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본 제품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병   | 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틸암모늄(2:3)액)               | 참고)                                      |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br>(4) 본 제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소독                            |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3<br>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br>2. 적용비율  |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  |
| 9.  | 2719-0031 | 킬벤질디메틸암                   | (유효균주:<br>용법용량                           | 적용대상  | 희석비율 및 방법                                       |  |
|     |           | 모늄(1:1)혼합물)<br>(수출용)(수출명: | 참고)                                      | 병원, 의료시설, 시험연구소 등 오염원 노출 및<br>전염병발생취약지의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   | 100배(1v/v%, 본제품 1리터를 물 99리터에 넣어 혼합)             |  |
|     |           | DR-Solution)              |  | 학교, 보육시설, 호텔, 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br>살균소독 및 위생세정   | 200배(0.5v/v%, 본제품 500미리리터를 물 99.5리터<br>에 넣어 혼합) |  |
|     |           |                           |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br>2. 적용비율  |   |  |
|     |           |                           |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
|     |           | 멀티엠피에스원<br>액(80%          | 단단한<br>물체표면의                             |   | 회석(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10. | 역화-n-앜킼디  |                           | 날개 표진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ul> <li>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
| 11. | 2719-0033 | 엠디-125                    | 단단한<br>물체표면의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br>2. 사용방법   |   |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병  | 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시   |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후에 소독한다.<br>나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목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           |
| 12. | 2719-0043 | 닥터큐007살균<br>소독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5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시   |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br>E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br>후에 소독한다.<br>나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br>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
| 13. | 2719-0047 | 쿼트플러스알파<br>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되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 | E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br>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br>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4. | 2719-0048 | 비티크린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br/>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br/>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br/>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증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br/>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15. | 2719-0051 | 닥터크린맥스액제<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16. | 2719-0052 | 박테사이드플<br>러스액제<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모늄 · 염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참고)   |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7. | 2719-0053 | 로얄크린플러스<br>액제<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ul> <li>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2. 희석방법, 사용방법</li> <li>가. 적용비율</li> <li>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li> <li>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18. | 2719-0054 | 닥터크린액제<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9. | 2719-0055 | 클린센스액<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ul> <li>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li> <li>대상</li></ul>   |
| 20. | 2719-0056 | 클리닉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br/>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21. | 2719-0057 | 크린앤크리너 (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ol> <li>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22. | 2719-0058 | 크린앤올킬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23. | 2719-0063 | 클린브이3<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및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 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4. | 2719-0064 | 메딕브이3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및 소독<br>(유효균주: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br>2. 사용방법<br>가.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br>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용법용량<br>참고)  | 나.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br>다.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br>라.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5. | 2719-0065 | 피크린마스터액<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회석방법, 사용방법</li> <li>가. 희석방법: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li> <li>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일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26. | 2719-0073 | 에이크린액<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7. | 2719-0076 | 세니페이스65<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벤<br>질디메틸암모늄(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대상  다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1:1)액)   |   | <ul> <li>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28. | 2719-0077 | 제로100솔루션<br>(80%<br>염화-n-알킬디<br>메틸에틸벤질암<br>모늄·염화알킬벤<br>질디메틸암모늄(<br>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li> <li>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29. | 2719-0078 | 메디카바살균소<br>독액<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가. 적용비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30. | 2719-0080 | 매딕솔루션액<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br>혼합물) | 단단한<br>물체표면의<br>살균 및 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방법</li> <li>가.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나.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다.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라.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31. | 2719-0081 | 매딕클리어<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회석방법 및 사용방법</li> <li>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li> <li>나.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일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32. | 2719-0082 | 옥시빌티비액<br>(과산화수소수(5<br>()%))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의 표면세정 및 위생소독  원액사용  3.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원액에 1~10분정도 접촉 후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그대로 말린다. 필요시 음용수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
| 33. | 2719-0083 | 옥시빌티비와<br>입스<br>(과산화수소수(5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br>2.사용장소 및 사용방법<br>(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0%))  | (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2) 1~10분정도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연건조 또는 필요시 음용수로 닦아낸다.<br>(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
| 34   | 2720-0001 | 벅스존크린케어<br>액(80%<br>염화-n-알킬<br>디메틸에틸벤질<br>암모늄·염화알<br>킬벤질디메틸암<br>모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br>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 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5.* | 2719-0001 | 1.닥터솔루션살<br>균소독액<br>2.쿼트플러스액  | 위생소독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200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증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6.* | 2719-0006 | 비티씨에이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br>및<br>소독(유효균주<br>: 용법용량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의석방법 적용비율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2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20 ml/m²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참고)   | <ol> <li>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본 제품은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sup>\* 35, 36</sup>번 제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예방용 소독제로 승인받은 34개 제품과 유효성분과 그 함량이 동일한 승인받은 소독제임

##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사용 가능 유효 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1  | 2619-0001 | 77방역<br>소독에탄올액<br>(에탄올) |  | 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 회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하거나, 소독액을 수건 등에 적셔서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용비율  사용방법 회석방법 적용비율 표면분무 원액 25 ml / m² 다. 분무방법 (1) 대상물에 25 ml / 제곱미터 용량으로 분무한다. (2)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분무한다. |
| 2  | 2619-0002 | 디에이크린<br>(에탄올)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 참고) | 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br>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br>가. 사용방법<br>(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하거나, 소독액을 수건 등에 적셔서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br>(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br>(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br>(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한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나. 적용비율       사용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표면분무     원액     25 ml / m²       다. 분무방법       (1) 대상물에 25 ml / 제곱미터 용량으로 분무한다.       (2)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분무한다.       (3) 공간에 다량 분무하거나 화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용 분무기를 사용한다.  |
| 3  | 2619-0003 | 오에스파워액<br>(에탄올)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br>용법용량 참고)  | 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 회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하거나, 소독액을 수건 등에 적셔서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용비율  사용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표면분무 원액 25 ml / m² 다. 분무방법 (1) 대상물에 25 ml / 제곱미터 용량으로 분무한다. (2)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분무한다. |
| 4  | 2719-0004 | 성인135백타액<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5  | 2719-0005 | 천왕유제<br>(염화벤잘코늄)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희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 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6  | 2719-0008 | 로 얄 크 린 살 균<br>소 독 액<br>(염화벤잘코늄)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회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7  | 2719-0009 | 하이프렐바에<br>스에프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 비율  대상 회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 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 상 희석방법 적용비율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3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2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50ml/m²   |
| 8  | 2719-0011 | 바이제로<br>(Bizero)     | 표인거 글린 봇<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ul> <li>3. 사용장소 및 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li> <li>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           |                      | 인 <b>리라</b> 미리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
| 9  | 2719-0012 | 오송크린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0 | 2719-0013 | 피크린<br>(벤잘코늄염화<br>물)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회석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배 희석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ul> <li>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11 | 2719-0016 | 닥터큐살균소독<br>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2 | 2719-0017 | 디스텔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적용비율</li> <li>대상</li> <li>되석 방법</li> <li>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ul>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li> </ol> |
| 13 | 2719-0019 | 비라클린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원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원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br>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br>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4 | 2719-0020 | 페스트캅비씨유<br>제(벤잘코늄염<br>화물)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5 | 2719-0022 | 메디크로스살<br>균소독액<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br>알킬벤질디메틸<br>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6 | 2719-0023 | 이디와입스<br>(염화벤잘코늄<br>액<br>(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 /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7 | 2719-0028 | 서우하이진액<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 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 비율 대상 회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ul>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18 | 2719-0029 | 잡스그린퓨어액<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적용비율</li> <li>대상</li></ol>   |
| 19 | 2719-0034 | 박테사이드유제<br>(벤잘코늄염화<br>물)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0 | 2719-0035 | 벤잘크린유제<br>(벤잘코늄염화<br>물)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 /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1 | 2719-0036 | 잡스살균비티씨<br>액(80%염화-n-<br>알킬디메틸에틸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것.<br>2. 사용방법<br>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벤질암모늄·염<br>화알킬<br>벤질디메틸암모<br>늄(1:1)액) | (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br>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br>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br>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2 | 2719-0037 | 설파세이프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직접 분무하고 마른 천이나 종이티슈를 이용하여 표면을 문지른다. 최소 5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유지한다. (단, Aspergillus niger, Influenza virus H1N1, Mycobacterium tuberculosis, Feline Calicivirus는 15분 이상) 2)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3 | 2719-0040 | 애니오설프<br>프리미엄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1) 제품의 분주 (1) 포장단위 1L 제품의 분주 제품 용기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용기 하단에서 상단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제품 액이 흘러나가고, 용기 상단에 액이 고인다(최대용량 20mL). 용기 상단에 새겨진 눈금에 따라 액을 계량하고 이를 분주하여 희석한다. (2) 포장단위 5L 제품의 분주 제품 용기 상단의 수동식 펌프를 누르면 액이 20mL씩 분주된다. 이를 희석한다. 2) 희석방법 본 액을 냉수 또는 미온수에 적용하여 400배(0.25%)로 희석한다. (예) 냉수 또는 미온수 7980 mL에 본품 20 mL를 넣어 잘 혼합한다. 나. 사용방법 (1)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은 후, 최소 5분 이상 방치한다. (단, Aspergillus niger, Candida albicans는 15분 이상) (2)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4 | 2719-0041 | 에코하이진파워<br>액(벤잘코늄염<br>화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용비율: 희석없이 바로 사용한다.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본 제품은 희석없이 바로 사용한다. (2)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분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르게 분무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3)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4)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5)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br>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br>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5 | 2719-0044 | 보디가드알파액<br>(벤잘코늄염화<br>물)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적용비율</li> <li>대상</li></ol>   |
| 26 | 2719-0045 | 크린마스타액<br>(벤잘코늄염화<br>물)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희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200배 희석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7 | 2719-0049 | 이지스액<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200 배 희석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증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8 | 2719-0050 | 바로클린액<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li> <li>적용비율: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ol> <li>(1) 본 제품은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li> <li>(2)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분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르게 분무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3)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4)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li> <li>(5)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li> </ol> |
| 29 | 2719-0059 | 바이탈오투살<br>균소독제<br>(이산화염소수)<br>(수출용)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대상 회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원액 사용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원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원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
| 30 | 2719-0060 | 엔지셉트플러<br>스와입스<br>(벤잘코늄염화<br>물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li> <li>필요한 경우 사용 후 10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 품으로 소독한다.</li> <li>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31 | 2719-0061 | 클리넬유니버<br>셜와입스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li> <li>사용 후 10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 품으로 소독한다.</li> <li>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32 | 2719-0062 | 사라사이드<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 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전용비율</li> <li>대상 회석 방법 단단한 물체의 표면 원액사용</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원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필요한 경우 원액에 최소 1∼5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33 | 2719-0066 | 사라사이드와입<br>스(벤잘코늄염<br>화물농축액 50)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2) 필요한 경우 1 ~ 5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 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4 | 2719-0068 | 페라싸이드액<br>(과초산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br>2. 적용비율<br>대상 회석 방법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용법용량 참고)  | <ul> <li>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100배 희석</li> <li>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35 | 2719-0069 | 페라플루액<br>(과초산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적용비율</li> <li>대상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100배 희석</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36 | 2719-0070 | 에이치아이엠스<br>파액<br>(과아세트산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ol> <li>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li> <li>적용비율</li> <li>대상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100배 희석</li> <li>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li> <li>(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ol> |
| 37 | 2719-0071 | 세니페이스200<br>(벤잘코늄염화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br>2. 적용비율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물액(50%))  | 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대상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 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8 | 2719-0074 | 다자바닥터<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br>알킬벤질디메틸<br>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2) 필요한 경우 1 ~ 5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9 | 2719-0075 | 보디가드에프<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br>알킬벤질디메틸<br>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 /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40 | 2719-0079 | 케어크로스살<br>균소독액<br>(80%염화-n-알<br>킬디메틸에틸벤<br>질암모늄·염화<br>알킬벤질디메틸<br>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br>표면의 살균 및<br>소독<br>(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41 | 2719-0084 | 에코하이진   | 단단한 물체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

| 번호 | 승인<br>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후 레 쉬 액<br>(벤잘코늄염화<br>물농축액50) | 표면의 살균 및<br>소독(유효균주 :<br>용법용량 참고) | <ul> <li>2. 적용비율: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li> <li>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li> <li>(1) 본 제품은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li> <li>(2)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분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르게 분무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li> <li>(3)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li> <li>(4)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li> <li>(5)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li> </ul> |

### 자주 묻는 질문

###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SARS-CoV와 ME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 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WHO는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밝혀진 근거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말과이를 접촉했을 때 전파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코로나19)

#### Q3. 코로나바이러스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나 MERS-CoV의 경우를 보면 체외로 배출된 상태에서 온도, 습도, 빛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경 표면에서 수일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확진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건 등은 소독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 Q4. 소독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짜 사멸하나요?

- WHO, 미국CDC 등의 정보에 따르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 MERS-CoV 등 과거에 밝혀진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소독제 효능을 시험한 결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및 70% 알콜 등에서도 소독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가의 환경부처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한 제품목록을 제시하였고(붙임 5), WHO 등에서 제시한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환경부 허가제품 제시하였으니(붙임 6)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중 소독제를 선택하여 사용시 반드시 제조회사별 사용방법, 효과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Q5. 손씻기의 효과와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6. 집을 소독한 경우 집을 비워야 하나요?

○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 시에는 소독기간에는 집을 비워야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 Q7. 다중이용시설에 환자가 다녀간 경우 전체를 소독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Q8.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 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Q9.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지침에 근거하여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일상적 소독은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Q10. 소독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환경소독은 환경부와 WHO 등에서 제시한 성분의 소독제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붙임 5과 6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Q11. 환경 청소 및 소독이 실제로 유해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까?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 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12. 거주지가 코로나19에 노출 된 것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거주지를 청소하고 소독해야합니까?

○ 거주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단계와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노출된 거주지 환경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Q13.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집을 소독하는 동안 개인 보호구 (PPE)를 착용해야합니까?

-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거주지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일회용 장갑 및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 및 소독제의 자극에 대한 잠재적 노출 을 방지해야합니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에는 얼굴,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버려야하며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은 후에 새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되면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 Q14. 집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어떤 것이 있고, 오염된 표면에 소 독제를 얼마나 오래 접촉시켜야 하나요?

-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목록은 붙임 5, 붙임 6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해야합니다.
- 가정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를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사용 전 바로 희석(1000ppm)하여 준비해야합니다.
  - 최소 10분간 희석액과 접촉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시간은 소독제가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소독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적절한 접촉시간에 대해서는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70% 알코올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예 : 금속 표면)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15. 피부에 가정용 락스와 같은 소독제가 닿으면 피부 자극을 유발하나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노출의 영향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노출 기간 및 사용된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접촉 부위에 부종, 염증 및 발적을 유발합니다. 피부 자체에는 유독하지 않지만 가려움증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도 자극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설명서의 사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소독 후 표면을 만지기 전에 환기를 잘 시키고 완전히 건조 되도록 하십시오. 표면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충분히 하여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Q16. "환경 표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집을 청소하고 소독할 때 구역과 물건을 집중 적으로 소독해야 하나요?

- 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내 공간과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문 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합니다.

# Q17. 매트리스, 소파,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합니까?

- 예.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 하여 세탁(고온 물이용) 하십시오.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 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Q18. 집에 반려동물 (개, 고양이 등)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수 있나요? 그리고 소독 작업을 수행할 때 반려동물을 멀리 해야 하나요?

○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소독된 표면에 미생물을 유입 시킬 수 있으므로 소독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19. 집 소독에 사용한 청소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 비투과성 청소 장비(예, 양동이 막대걸레의 막대, 플라스틱)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제로 완전히 세척하고 재사용하기 전에 건조시켜야합니다.
- 사용된 모든 천과 폐기물은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3판)을 참조하여 처리합니다.

### □ 참고 문헌

- 1.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4). MOH Pandemic Readiness and Response Plan for Influenza and other Acute Respiratory Diseases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nCoV) Infection is Suspected. WHO/2019-nCoV/IPC/v2020.1.25.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How to Put On and Take Of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trieved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site: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PPE\_EN\_Alsl.pdf
- 4.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2008).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May 2019 updated)
- 5. Interim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Areas Exposed to Confirmed Case(s) of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in Non-Healthcare Commercial Premises(Revised on 28 February 2020):
  - https://www.nea.gov.sg/our-services/public-cleanliness/https://www.nea.gov.sg/our-services/ public-cleanliness/environmental-cleaning-guidelines (National Environment Agency singapore)
- 6. Guidance COVID-19: decontamination in non-healthcare settings Published 26 February 2020 GOV.UK Public Health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COVID-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
- 7. 「嚴重特殊傳染性肺炎(武漢肺炎)」因應指引: 社區管理維護--1090304修訂.pdf https://www.cdc.gov.tw/File/Get/9G\_tJC4fy30cIWSD8P4CQ

# 부 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 제3판 -

2020. 3. 2.

환경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7판,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가 개편(3.2)됨에 따라,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보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마련함
- (치료체계 개편사항)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 입원치료,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자택대기 중에도 유선상담을 통해 증상 관리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내용   |
|-----------------|--|
| 생활치료센터<br>폐기물   | <ul> <li>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확진자의 발생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소독·<br/>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소독·보관한 후 당일 처리토록 함</li> <li>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와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폐기물(예:행정 인력에서 발생한<br/>폐기물 등)도 전량 일반의료폐기물로 소독·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소독·<br/>보관한 후 당일 처리토록 함</li> <li>지역·유역환경청에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전담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지정<br/>하고,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li> <li>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 및 사후 처리<br/>하도록 함</li> </ul> |
| 자가격리자<br>배출 폐기물 | <ul> <li>확진자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지역보건소를<br/>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li> <li>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가 많아<br/>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br/>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세부처리 방안 : 붙임5)</li> </ul>   |

# 목차

| 1.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1     |
|---------------------------|
| 2.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2  |
| 3.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3   |
| 4.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5 |
| 5.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6    |
| 6. 행정지원 대책 6              |
|                           |
| 붙임8                       |

### □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발생 및 보관】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붙임2 참조)
  -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후 재사용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독 안내 지침 참고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 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 【 수집·운반 】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bigcirc$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circ}$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

## 【소각처리】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 【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 구분            | 배출자 보관  | 운 반  | 처 리  |
|---------------|---|--|--|
| 격리폐기물<br>현행규정 | <ul><li>○ 7일까지 보관</li><li>○ 합성수지 전용용기</li><li>○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br/>냉장보관)</li><li>○ 보관창고 소독</li></ul>                  | ○ 냉장운반<br>○ 임시보관(2일)   | <ul><li>○ 처리기한 2일</li><li>○ 전용보관 창고</li><li>(조직물류 냉장<br/>보관)</li></ul> |
| 격리폐기물<br>관리강화 | <ul> <li>○ 당일 위탁처리         <ul> <li>(1~2일 이내 보관)</li> </ul> </li> <li>○ 냉장보관 원칙</li> <li>○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li> </ul> | <ul><li>○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li><li>○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li><li>소독</li></ul> | ○ <u>당일 소각처리</u>   |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 ②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 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 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 ③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 확진 이후 병실 부족 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 추가 제공
-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 보급(붙임4)** 
  - \*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
-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역락하여 배출
  -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 ※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 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 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 ③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병원 이송 시까지 보관
- (수거·처리) 병원 이송 시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수 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 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비상수거) 확진자 폭증으로 상기의 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판단 하에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 체계를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음(세부처리 방안 : 붙임5)
  - · 지방청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배출요청 접수를 통해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여 별도 수거·처리 추진

###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 ④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 참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월)
  -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5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코로나-1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 개인보호장비\*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장비 착용
-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도)
-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 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자체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 6 행정지원 대책

○ [신속처리] 신종 코로나-19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처리** 

코로나-19 폐기물 발생 → 관할 환경청 처리전화신고 → 수집·운반 및 당일처리 (기존 계약업체) → 환경청 및 시·군·구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원

- 폐기물처리업체 변경시, 선 변경 후 행정처리 허용
  - ※ 병원 등 배출기관을 철저히 관리하되, 코로나-19 폐기물의 우선 처리 과정에서 수집·운반 등이 폭증하여 코로나-19 폐기물 외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후 적용
- 지역별 '생활치료시설' 지정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은 사후 처리 (지역·유역환경청)
  - \*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에 생활치료시설을 배출자로 임시 등록하여 폐기물 인수·인계정보 관리

- [환경부] 의료폐기물 총괄 상황관리
  - 당일 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관련 병원·처리업체 간 이견 중재, 병원휴업 시 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등
  - 전용봉투 및 소독제 확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안전장비(방역복 등) 지급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 [환경청]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 상황관리
  - 배출량 폭증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 도래시, 미리 일반의료폐기물 비상소각(지정폐기물 소각업체) 검토· 준비
- [시·도] 특별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도 관할 여건에 따라 신종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대책 강구
  -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중상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 요청·접수 시, 배출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자에 게 통보
  - 코로나-19 의심증상 신고접수시 보건소에서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통보토록 조치하고 합동으로 대응
  -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 이송에 따른 **119 구급대 등의 의료폐기물** 소독 및 처리 지원대책 강구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처리상 황 모니터링 및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도

### 《 관리체계도 》 코로나-19 폐기물관리 중앙재난 한국환경 종합상황반 안전대책본부 공단 (환경부) (국무총리) ○ 화자발생 및 병원 ○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 발생 등 실시간 공유 상황 총괄관리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안전관리 ○ 자가격리폐기물 안전 모니터링 협력·지원 체계 관리 매뉴얼 보급 구축 시·도 유역(지방)청 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전용봉투소독제 등 구매 ○ 환경미화원 보호 ○ 자가격리폐기물(양 ○ 비상시 폐기물 처리 장비 및 소독용품 성 확진자) 처리 업체 연결 지원 지원 업체 지정 협조 ○ 자가격리폐기물(양성 ○ 자가격리 장소 ○ 수집·운반·처리과정 확진자) 처리 (양성확진시) 안전관리 대책 ○ 폐기물처리업자 재정 소독 등 대책강구 수립·추진 등 지원 심사 등 시·군·구 및 보건소 ○ 자가격리자에게 폐기물 전용봉투, 소독약품 제공 ○ 소독시 유역·지방 환경청 사전통보 후괜현화물채리 시·도 및 시·군·구 코로나-19 대책본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 개인보호장비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①폐기물 소독제 ②의료폐기물 전용봉투 (주황색 봉투) ③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④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골판지류) 입니다.

#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격리의료폐기물

- □ 격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필요 없이 제공되는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기 전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 □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넣고,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 후,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밀폐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은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의료폐기물

- □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폐기물(도시락 및 구호물품 박스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 □ 분리배출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넣고 밀봉하기 전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소독 후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묶은 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 □ 밀봉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는 수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소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내 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소각 처리방법]

- □ 별도 (임시)보관장소는 1회/일 소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은 매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수집·운반, 소각)에서 운반 및 소각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①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③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된 경우 폐기물 배출요령

①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은 후 병원 이송 전까지 제공된 합성 수지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후 보건당국 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의료폐기물 비상수집·운반체계 세부 운영지침

# I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 감염병 위기경보가 상향(경계→심각, 2.23) 되고,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병원에 이송되지 못한 "자가격리 확진자"가 다수 발생
  - ⇒ "자가격리 확진자" 발생폐기물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 마련함

# 2. 기본방향

- □ "자가격리 확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
  - ① 자가격리 확진자가 자택 등에 격리된 경우
    - ⇒ 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 주관으로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방문, 수거
      - ※ 일반(미 확진)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로 처리
  - ②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경우
    - ⇒ 보건소 주관으로 확진자 이송 시 "격리의료폐기물"을 수거 후 의료폐기물처리 업체 위탁처리

# Ⅱ 적용대상 및 시기

- 1. 대 상 : 확진자 폭증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 포함)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가 많아 처리가 어려워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격리의료폐기물"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 2. 시 기 : 동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비상 수집·운반체계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적용
  - ⇒ 동 지침 적용 시기 이후 발생폐기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름

# Ш

# 자가격리자 폐기물 수거·처리 방안

## 1. 기관별 역할 분담

- □ 지방환경청 및 시·군(구), 보건소 공통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처리요청 접수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지역 발생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유선접수
  -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정보, 지방환경청 전달
    -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정보의 접수·처리** 등을 위해 **기관별** 전담 "상황반" 구성 및 연락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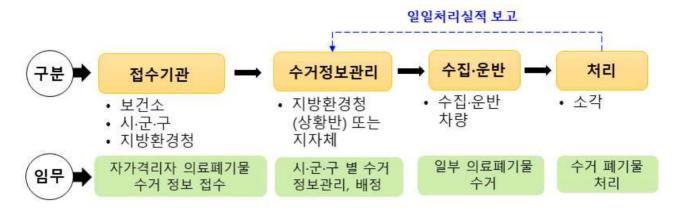
# □ 지방환경청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 구축·운영
- 시·군(구), 보건소 등을 통해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 총괄관리
-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현황을 바탕으로 "수거·운반차 량" 배정
- 일일 "수거·운반차량"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 관리
  -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간 **연락체계 구축**

# □ 시·군(구) 보건소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참고1 참조)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유선신고 방법안내(기관별 연락처 등)
- "자가격리 확진자" 거주지역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봉투) 배포

# 2. 수거·처리체계



- ①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 보건소
  - (접수방법) 전화 등을 통해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배출자, 배출량, 연락처 등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사항 접수
    -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대장 양식에 따라 접수(참고2 참조)
  - (접수정보 관리) 시·군(구), 보건소 등은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 거요청 접수현황을 관할 지방환경청에 E-mail 통보(17시 기준)
- ②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배정
  - **(주관기관)** 지방환경청 또는 시·군(구)
  - (주요내용)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 관리
  - (수거·처리반 구성)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지역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배정
  -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지역, 수거량 등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차량 배정
  - (수거·처리량 관리) 일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에 배정된 배출지 역, 수거량 대비 실제 수거·처리현황 등 정보 관리

# ③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 (주관) 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주요내용) 지방환경청의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바탕으로 비상 수집·운반을 위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확보, 지원
- 의료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되, 차량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시차량(냉장시설 설치)으로 수집·운반 가능
-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원활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위해 차량 양 측면 및 후면에 "의료폐기물 특별운반차량" 표식 부착

[의료폐기물 특별운반차량 표시 방안]



- 폐기물 수집·운반 전담 업체 종사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확인 받아야 됨 (참고3 참조)
- 일일 비상 수집·운반한 격리의료폐기물은 **수거 당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
- 일일 수집·운반한 격리의료폐기물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운반 실적 관할 지방환경청에 통보
  - ⇒ 일일 수거·운반처리실적 통보는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 대장 양식"을 준용함

# Ⅳ 기타 행정사항

# 1. 일일 격리 의료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보고

- □ 지방환경청은 동 지침에 따른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처리실적을 매일 환경부에 보고(17:00까지)
  - 일일 수거·처리실적은 환경부(폐자원관리과)에 내부메일로 **통보**(17시기준, 참고4 서식 참조)

# 2. 재정지원

□ 동 지침에 따른 격리 의료폐기물 비상 수집·운반체계 가동에 따른 수 집·운반·처리 비용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국고지원

## 참고

# 입원대기 환자 및 지자체·보건소 행동 요령

## 1 입원대기 환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 봉투에 봉투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담아서 소독제로 폐기물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고 별도 보관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1회 이상 소독 권장)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폐기물이 들어있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배출량도 함께 전달)

폐기물 수거 신청이 접수되면 대략적인 수거 시점을 유역(지방) 환경청 또는 시·군(구)에서 안내해드리고 작업자가 문전 방문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이오니, 보관하셨던 폐기물을 수거 예정 시점에 문전에 배출해 주시는 등 폐기물 수거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② 지자체·보건소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로부터 폐기물 수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사항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와 관련한 119대원, 방역작업자 들로부터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부 및 환경청 비상연락망

| 관할기관 |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환경부  |                  | 폐자원관리과 | 권병철(과장) | 044-201-7360 |
|      |                  |        | 김유경     | 044-201-7367 |
|      |                  |        | 정근식     | 044-201-7377 |
|      |                  |        | 김준식     | 044-201-7361 |
|      |                  |        | 김정민     | 044-201-7362 |
| 환경청  | 한강청              | 환경관리과  | 이성철(과장) | 031-790-2802 |
|      |                  |        | 윤희종     | 031-790-2806 |
|      |                  |        | 허연희     | 031-790-2812 |
|      | 낙동강청             | 환경관리과  | 정종호(과장) | 055-211-1610 |
|      |                  |        | 김치훈     | 055-211-1616 |
|      |                  |        | 최정민     | 055-211-1626 |
|      | 금강청              | 환경관리과  | 손중훈(과장) | 042-865-0730 |
|      |                  |        | 문제근     | 042-865-0738 |
|      |                  |        | 김다애     | 042-865-0725 |
|      | 영산강청             | 환경관리과  | 정종범(과장) | 062-410-5210 |
|      |                  |        | 박민윤     | 062-410-5202 |
|      |                  |        | 김수영     | 062-410-5215 |
|      | <b>원주청</b> 환경관리과 |        | 김효영(과장) | 033-760-6041 |
|      |                  | 환경관리과  | 이한은     | 033-760-6042 |
|      |                  |        | 김슬기     | 033-760-6047 |
|      | 대구청              | 환경관리과  | 임경희(과장) | 053-230-6430 |
|      |                  |        | 오경석     | 053-230-6435 |
|      |                  |        | 김도윤     | 053-230-6438 |
|      | 전북청              | 환경관리과  | 한상윤(과장) | 063-270-8831 |
|      |                  |        | 장현영     | 063-238-8842 |
|      |                  |        | 정대훈     | 063-238-8843 |